

중국 반덤핑 법규와 WTO 규범과의 적합성 비교 연구

A Study on the Comparison Between China's Anti-Dumping System and WTO Agreement

신성식(Sung-Shik Shin)

국립창원대학교 경상대학 국제무역학과 조교수
(주저자) ssshin@changwon.ac.kr

최해범(Hae-Bum Choi)

국립창원대학교 경상대학 국제무역학과 교수
(교신저자) choih@changwon.ac.kr

목 차

- | | |
|---|---------------------------------------|
| I. 서론 | IV. 중국 반덤핑 법규와 WTO 반덤핑협정과
의 적합성 비교 |
| II. 중국 반덤핑제도의 법적근거 | V. 결론 |
| III. 중국 반덤핑제도와 WTO 반덤핑협약의
운용절차 및 내용 비교 | 참고문헌 |

국문초록

중국은 WTO 회원국으로써 WTO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반덤핑 제도 관련 규범 및 기타 각종 규범들을 여타의 WTO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국내법과 제도운용에 있어서 WTO의 그것과 합치시켜 운용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의 반덤핑 법규는 덤핑마진의 산정, 경미수입물량에 대한 조사 종결기준, 일몰제시 등과 관련된 세부규정에 미흡함을 지적받고 있어 법적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가격약속과 관련된 규정들 중 일부 규정은 WTO 협정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정부는 단독 혹은 WTO 여타 회원국과 함께 중국 정부에게 반덤핑 법규를 WTO관련 협정에 부합되도록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중국 정부가 자의적으로 운용할 여지가 있는 모호한 규정들을 구체화시켜 줄 것을 요구해야 한다. 이와는 별도로 우리나라는 중국이 반덤핑 제소를 개시하면 WTO 관련 협정과 차이가 나는 중국의 반덤핑 법규를 중국 당국이 어떻게 적용하는 지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여, 규정상의 모호성을 WTO 관련 협정의 내용과 부합되게 적용하는지 혹은 위배되는 적용을 하는지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어 그 대응책을 준비해야 한다.

주제어 : WTO 협정, 반덤핑제도, 덤핑마진, 일몰제시

I. 서론

2010년 말 현재 교역규모면에서 중국은 한국의 제1의 교역대상국으로써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¹⁾ 중국의 국가별 교역규모면('10. 12 기준)에서 한국은 수출 688억불, 수입 1,380억불로 수출부문은 4위, 수입부문은 2위를 차지하는 주요 교역상대국으로 부상하였다. 특히 對中 무역에서 한국의 수출액 증가폭이 전년대비('10. 12 기준) 34.8%의 성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중국의 對韓 무역수지 적자폭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으로 692억 1천 2백만 불('10. 12 기준)에 달하고 있다. WTO 통계자료에 따르면 1995년 이래 2008년 6월 현재 전 세계적으로 반덤핑 조치는 2106건, 상계관세조치가 121건, 세이프가드조치는 89건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중국은 WTO 가입이후 1995년부터 2010년 6월 현재 중국의 반덤핑 피제조 건수는 563건으로 세계에서 반덤핑 조치를 가장 많이 받은 국가로 나타났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그리고 대만, 미국, 일본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8년 6월까지 중국은 한국을 상대로 31건의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여 25건의 반덤핑조치를 부과하였고, 일본 25건, 미국 22건, 대만 14건, EU 9건을 부과하였다. 2008년 이후부터는 수출입장려정책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바 중국 정부는 자국 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반덤핑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²⁾ 이와 같은 중국 반덤핑 조치의 적극적인 활용은 한국산 제품에 대한 빈번한 수입규제로 이어져 우리나라는 중국으로 부터 최대의 반덤핑 규제 대상국가³⁾로 자리하게 되었다.

반덤핑 조치는 WTO 출범을 전후하여 WTO 규범상의 모호성을 이유로 선진국과 후진국을 불문하고 수입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빈번하게 활용되어 왔으며, 심지어 일부 국가에서는 제도의 법적한계를 일탈하여 통상보복 수단으로까지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김경중, 1999). 이제 반덤핑 조치에 관한 덤핑 그 자체가 불공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덤핑 조치가 불공정하게 운용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전의천·김석민, 2003). 이러한 현상은 최근 중국 정부가 경기과열 억제정책의 일환으로 원자재 등의 수입제한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제한조치가 강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어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의 對中 수출에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1) 2010년말 현재 중국과의 무역규모는 1884억 1천 2백만 달러(수출 1168억 3천8백만 달러, 수입 715억 7천4백만 달러)를 나타내고 있으며, 2012년 2000억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다(한국무역협회, 2011.11.30일자 통계자료).

2) 중국이 2005년 5월말까지 실시한 반덤핑 조사는 총 36건이며 이 중 WTO 가입 이후 실시한 반덤핑 조사가 25건으로, 이는 중국이 WTO에 가입으로 인해 관세 및 각종 무역장벽이 크게 낮아져서 시장개방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을 규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반덤핑 규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3) 2007년 3월 말 현재 중국 정부의 한국에 대한 반덤핑 규제는 22건 임. 최근 2009년 2월 12일 중국 상무부가 한국산 테레프탈산(TPA, 페트병 등의 원료로서 연간 대중 수출액이 28억 달러)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발표함(무역위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정부는 2005년 11월 개최된 부산 APEC 정상회의에서 중국에게 ‘시장경제국지위’(Market Economy Status : MES)⁴⁾를 최초로 인정하였다. 향후에도 중국의 입장에서 무역구제 등의 측면으로 볼 때, 시장경제국지위국으로 인정받을 경우 여타국가로부터 수입규제조치와 무역마찰을 피할 수 있어 자국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지속적으로 시장경제지위를 요구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원인에는 중국이 WTO 가입 이전부터 교역상대국들이 자국에 대한 일률적인 비시장경제국지위 부여로 인하여 해당국의 시장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제3국의 대체국가를 선정하여 왔으므로 대체국 선정에 있어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덤핑마진 산정 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중국에 대한 차별적 무역관행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왕승빈, 1996). 또한 중국이 WTO 가입당시 최장 15년간(2001~2016)의 비시장경제국지위를 인정할 것을 용인함에 따라 교역대상국으로부터 반덤핑 판정에서 승소하기 어렵다는 근거를 들어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이러한 원인으로 일부 WTO 회원국들이 자국을 상대로 하는 반덤핑 제소가 증가하여 반덤핑 피소사례가 세계 1위가 될 정도로 불이익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미국, EU, 일본 등에게 시장경제국지위를 인정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정부가 중국에 대하여 시장경제국지위를 인정한 것은 일정부분 한중간의 교역규모 확대를 고려하여 발전적 계기를 제공했다고 판단된다.

중국은 선진국들에 비하여 반덤핑제도의 실제적 운용경험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중국의 반덤핑제소 남용은 자칫 향후 우리나라의 對中 수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으며, 이는 통상마찰로 발전할 소지가 다분하다. 더욱이 우려되는 점은 반덤핑 제소가 중국 당국에서 조차 의도하지 않던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은 WTO 회원국으로써 WTO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반덤핑제도 관련 규범 및 기타의 각종 규범들을 여타의 WTO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국내법과 제도운용에 있어서 WTO 협정과 합치시켜 운용할 의무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 정부의 반덤핑제도 운용 근거가 되는 현행 반덤핑 법규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이들 법규와 WTO 협정 관련 규범과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중국의 반덤핑법규가 WTO 협정 관련 규범에 합치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개정해야할 부분을 제시하고자 한다.

4) 시장경제국지위는 과거 사회주의 경제국가의 덤핑 수출을 규제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으로 반덤핑 조사시 시장경제국은 수출국의 내수가격과 수출가격을 비교해 덤핑마진을 산정하지만, 비시장경제국은 수출국 아닌 제3국의 가격과 비용을 적용해 덤핑마진을 산정하여 반덤핑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폐소율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고율의 반덤핑관세를 부과 받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대외수출에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대외신용도에도 불리하게 작용한다.

II. 중국 반덤핑제도의 법적근거

1. 반덤핑제도 관련규정

중국의 반덤핑제도의 법적근거가 되는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WTO 가입에 앞서 1994년 5월 12일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 상무위원회(常務委員會) 제7차 회의에서 총 8장 44조로 구성된 「중화인민공화국대외무역법」(中華人民共和國對外貿易法 : 이하 ‘대외무역법’이라 함)이 최초의 입법레이다(Jianming Shen, 1997). 동법 제30조와 제32조에서는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된 상품이 ①기존의 국내 관련 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야기하거나, 또는 ②실질적 피해의 위협을 초래하거나, 또는 ③국내 관련 산업의 설립에 실질적 장애를 야기한 경우, 국가에게 이러한 피해 또는 피해의 위협 또는 장애를 소멸 또는 경감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대외무역법」 동 규정 전체 44개 조문 중 반덤핑조치와 관련된 조문은 단 2개뿐이어서 이 2개의 조문에 근거하여 국내산업의 청원에 대응할 수 있는 역할을 하지 못함에 따라 반덤핑조치에 대한 별도의 이행 규정이나 행정해석 등에 의한 구체적 규정을 보완하고자 1997년 3월 25일 국무원은 국무원령 제214호의 총 6장 42개 조문으로 구성된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 및 반보조금조례」(中華人民共和國反傾銷和反補貼條例)를 제정·공포하기에 이른다. 이를 계기로 시행령이나 규칙의 미비로 실시치 못한 중국의 반덤핑제도는 1997년 12월 한국산 신문용지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실시하며 본격적으로 운용되었다.

이후 2001년 11월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반덤핑 및 반보조금 조례」를 WTO 규정에 입각하여 ‘반보조금’에 대한 부분을 「반보조금조례(反補貼條例)」로 개정하여 분리시켰고, 2002년 반덤핑제도 규정을 「반덤핑 조례」로 대체하여 독립적으로 법제화 시켰다.

이러한 「반덤핑조례」는 반덤핑제도 운용 절차상 중국당국의 내부규정에 의존함으로써 투명성 결여의 문제와 사법심사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절차상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고, 동종 상품에 대한 정의와 정상가격 산정방법에 대한 규정이 불명확한 이유로 덤핑 관련사건 발생 시 중국입장이 반영된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2004년 4월 「대외무역법」이 대폭 개정됨으로서 동법 제37조, 제38조, 제39조는 ‘대외무역조사와 관련된 조사사항 및 조사절차’를 규정하고, 제41조는 반덤핑제도와 관련한 일반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제42조는 “기타 국가나 지역⁵⁾의 물품이 제3국 시장에 덤

5) 중국의 경우 홍콩, 마카오, 대만 등을 국가개념으로 판단하지 않고, 지역개념으로 판단하여 관련법에 지역을 별도로

핑 수출로 인해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 또는 그 위협 및 국내산업 육성에 실질적인 장애를 야기할 경우 제3국 정부와 협상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제50조는 무역구제조치의 우회에 대응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마광, 2008).

이와 같이 2004년 6월 1일 부터 시행된 「반덤핑조례」가 중국의 반덤핑조치의 주요한 법원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모두 6장 5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총칙으로 반덤핑조례의 목적, 제2장 덤핑의 손해, 제3장 반덤핑조사, 제4장 반덤핑조치, 제5장 반덤핑관세와 가격약속의 기간 및 재심, 제6장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반덤핑조례」는 반덤핑조치와 관련하여 실제적 요건과 절차적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중국의 반덤핑제도 운용과 관련된 핵심법규라고 할 수 있다.

2. 반덤핑 조사기관 및 업무내용

중국의 반덤핑제도 운용기관으로는 크게 상무부(中華人民共和國商務部),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國務院關稅稅則委員會) 그리고 세관총서(海關總署) 등으로 구분된다.

상무부는 가장 핵심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반덤핑조사와 산업피해조사 업무를 담당한다. 덤핑조사와 확정판정은 상무부 내 수출입공평무역국(進出口公平貿易局)이 담당하고, 피해조사 및 확정판정은 산업피해조사국(產業損害調查局)이 담당한다. 단 예외적으로 농산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는 상무부와 함께 농업부(中華人民共和國農業部)에서 피해조사를 수행한다(마광, 2008).

그리고 국무원 산하의 관세세칙위원회는 「반덤핑조례」의 모든 조항을 규율하고 동 조례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리는 기능을 담당하는데, 선행적으로 상무부가 판정한 덤핑마진 한도 범위 내에서 결정하되, 상무부의 조사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결정을 유보할 수 있다. 또한 관세세칙위원회는 세관관세세율, 연도잠정세율, 관세쿼터세율, 특별관세(반덤핑관세, 상계관세 포함)세율의 조정에 대한 심사결과와 중대한 관세정책 및 대외관세협상 방안을 심의하는 의사협조기관의 역할을 수행한다(마광, 2008). 관세세칙위원회는 국무원 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지협적인 세율조정을 주로 담당하고, 관세제도의 제정, 심의, 시행에 대한 전반적인 틀은 국무원에서 기획한다. 관세세칙위원회의 구성원은 국가계획위원회, 상무부, 기전부, 재정부, 상업부, 물자부, 국무원 법제국, 국무원 경제조절관공실, 해관총서, 국가물자국 등의 책임자로 구성한다. 동 위원회 역시 반덤핑 제도와 관련한 구체적 조사업무를 수행

하지 않지만, 반덤핑 조사의 최고 권력기관으로서 상무부의 판정에 따라 잠정관세와 최종 반덤핑관세의 부과여부에 대한 최종결정권을 행사한다.

마지막으로 세관총서의 기능은 반덤핑에 대한 조사가 종료되어 결정이 내려지면 반덤핑관세를 징수하는 기관으로 우리나라 세관의 기능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기구이다.

Ⅲ. 중국 반덤핑 제도와 WTO 반덤핑협약의 운용절차 및 내용 비교

1. WTO의 반덤핑 절차

반덤핑조사는 국내 산업에 의하거나 또는 이를 대신하여 행하여진 서면신청으로 개시된다.⁶⁾ 이러한 신청은 덤핑, 피해 및 덤핑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거를 포함해야 하며, 관련증거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단순한 주장은 충분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⁷⁾

반덤핑조사를 신청할 수 있는 국내 산업은 덤핑 수입된 동종 상품의 해당 산업의 국내생산자 전체 또는 이들 중 생산량의 합계가 당해 물품의 국내 총생산량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생산자들을 의미한다.⁸⁾

반덤핑조치는 제3국을 대신하여 부과될 수 있다. 즉 다른 수출국의 덤핑수출로 동종 상품을 수출하는 제3국의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는 경우에 제3국은 수입국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다른 수출국 수출자나 생산자에게 반덤핑관세의 부과를 요청할 수 있다. 제3국을 대신한 반덤핑조치는 동 조치를 요청한 제3국 당국에 의하여 신청된다.⁹⁾ 제3국 당국은 덤핑수입에 관한 가격정보와 제3국의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의 사실 등 수입국 조사기관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¹⁰⁾ 수입국은 제3국의 반덤핑조치의 요구에 대하여 해당 덤핑수입의 제3국의 해당산업 전체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야 하며, 피해의 여부는 덤핑의 해당산업의 수입국에 대한 수출에 대한 영향이나 해당산업의 전체 수출에 대한 영향만을 근거로 평가될 수 없다.¹¹⁾

특별한 상황에서 조사기관은 국내 산업에 의하거나 이를 대신하여 이루어진 서면신청을

6) WTO 반덤핑협정 제5조 제1항

7) WTO 반덤핑협정 제5조 제2항

8) WTO 반덤핑협정 제4조 제1항

9) WTO 반덤핑협정 제14조 제1항

10) WTO 반덤핑협정 제14조 제2항

11) WTO 반덤핑협정 제14조 제3항

접수하지 않고 조사의 개시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기관은 신청에 의한 조사와 마찬가지로 조사의 개시를 정당화할 수 있는 덤핑, 피해 및 인과관계에 관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¹²⁾

반덤핑조사절차는 덤핑이 존재하는지의 여부와 덤핑수입으로 국내 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의 두 가지 조사로 이루어진다. 덤핑과 피해의 증거는 반덤핑조사의 개시여부에 관한 결정과 잠정조치의 적용 및 확정반덤핑 관세의 부과시까지 반덤핑조사절차의 전 과정에서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며,¹³⁾ 덤핑과 피해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충분한 증거가 인정되지 않으면 반덤핑절차는 종결되어야 한다. 조사는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1년 내에 종결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개시 후 18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¹⁴⁾

덤핑마진이 최소허용수준이거나 또는 실제적 또는 잠재적인 덤핑수입량이나 피해가 무시할 만한 미소수준이라고 조사기관이 결정하는 경우, 조사는 즉각적으로 종결된다. 덤핑마진이 2%미만인 경우 이러한 덤핑마진은 최소허용수준인 것으로 간주되며, 특정국으로부터의 덤핑수입물량이 수입회원국내 동종 상품 수입의 3%미만을 점유하는 국가들이 총체적으로 수입 회원국내 동종 상품 수입물량의 7%를 초과 점유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덤핑수입량은 일반적으로 무시할만한 미소물량수준으로 간주된다.¹⁵⁾

반덤핑조사에서 모든 이해관계자는 조사기관이 요구하는 정보에 대하여 통보받으며, 당해 조사와 관련이 있다고 간주하는 모든 증거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받는다.¹⁶⁾ 질의서를 받은 수출자 또는 외국의 생산자는 응답을 위하여 최소한 30일을 부여 받고 동기간의 연장에 대한 요청이 있는 경우 조사당국은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¹⁷⁾ 조사기관은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제공된 정보의 정확성 여부를 검증할 수 있다.¹⁸⁾

이해관계자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필요한 정보에의 접근을 거부하거나 달리 동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또는 조사를 중대하게 방해하는 경우 조사기관은 이용 가능한 자료에 근거하여 예비결정을 내릴 수 있다.¹⁹⁾

반덤핑조사의 전 과정을 통하여 모든 이해당사자는 자신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한 충분한 기회를 가진다. 이를 위하여 조사기관은 요청에 따라 모든 이해관계자가 상반된 이해를 갖는

12) WTO 반덤핑협정 제5조 제6항

13) WTO 반덤핑협정 제5조 제7항

14) WTO 반덤핑협정 제5조 제10항

15) WTO 반덤핑협정 제5조 제8항

16) WTO 반덤핑협정 제6조 제1항

17) WTO 반덤핑협정 제6조 제1항의 1

18) WTO 반덤핑협정 제6조 제7항

19) WTO 반덤핑협정 제6조 제8항

당사자와 회합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반대의견이 제시되고 반박주장이 개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²⁰⁾

다음의 <표 3-1> 은 WTO 관련 협정과 중국의 반덤핑 실체법 비교를 통하여 반덤핑 절차상의 상이점을 구분하여 살펴본 것이다.

<표 3-1> WTO 반덤핑 협정과 중국의 반덤핑 실체법 비교

		WTO 반덤핑 협정	중국
정상가격	통상거래 가격	- 국내 판매량이 수출한 물량의 5%이상 - 합리적인 기간 동안 국내 판매 물량의 20%이상 원가미만 판매가격 없는 경우 문제 : 5%의 충분성에 대한 문제와	- WTO의 조건에 대한 언급이 없음 - 문제 : 자의적으로 통상거래가격을 선정할 여지가 존재 원가미만판매 기간선정에 대한 문제
	제3국 수출가격 및 구성가격	- 정상적인 국내가격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구성가격과 비교하여 덤핑결정	- 대체로 한국의 경우와 동일 - 문제 : 구성가격 산정에 구체적인 언급이 없음
덤핑마진		- 동일한 거래단계, 통상공장도수준으로 비교하며 가능한 한 동일 시기에 대하여 비교되어야 하고 WTO반덤핑협정에서 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적절한 조정이 이루어져야 함	- 대체로 동일 - 문제: 고려되어야 하는 상황(판매조건, 조세, 거래단계 등) 대한 언급이 없어 모호함
문제: Zerong 문제			
피해의 결정	피해	① 기존의 국내 산업에 대한 실질 피해, ② 실질적 피해의 위협, ③ 관련 국내산업 설립의 장애	
	피해 고려요소	① 덤핑수입의 물량이 국내생산 또는 소비에 비해 절대적 또는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증가되었는지 여부 ② 덤핑수입의 가격이 국내동종상품의 가격인하 초래 및 가격상승 억제 여부 ③ 덤핑상품의 수입가격이 덤핑수출국내 정상가격과 비교하여 뚜렷하게 하락되었는지 여부 ④ 국내산업의 생산량·가동률·재고·판매량·시장점유율·가격·이윤·생산성·투자수익·현금수지·고용·임금·성장·자본조달·투자능력·기술개발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①② 요소 동일 ③ 국내산업의 관련 경제요소 및 지표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④ 덤핑수입상품의 수출국, 원산지국의 생산 및 조사대상상품의 재고상황 ⑤ 기타요소 문제: 기타요소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어 자의적으로 결정할 여지 존재
	피해중건 고려요소	① 덤핑차액이 2%미만 ② 피제소국의 수입량이 수입국내 동종 상품 총수입량의 3%미만이고 3%미만수입 국가들로부터의 수입량 합계가 동종 상품 총수입량의 7%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조사를 종결 문제 : 미소 덤핑마진 2%가 충분한가에 대한 논쟁	

자료 : 염철용, 「WTO체제하 한국과 중국의 반덤핑법 비교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6. P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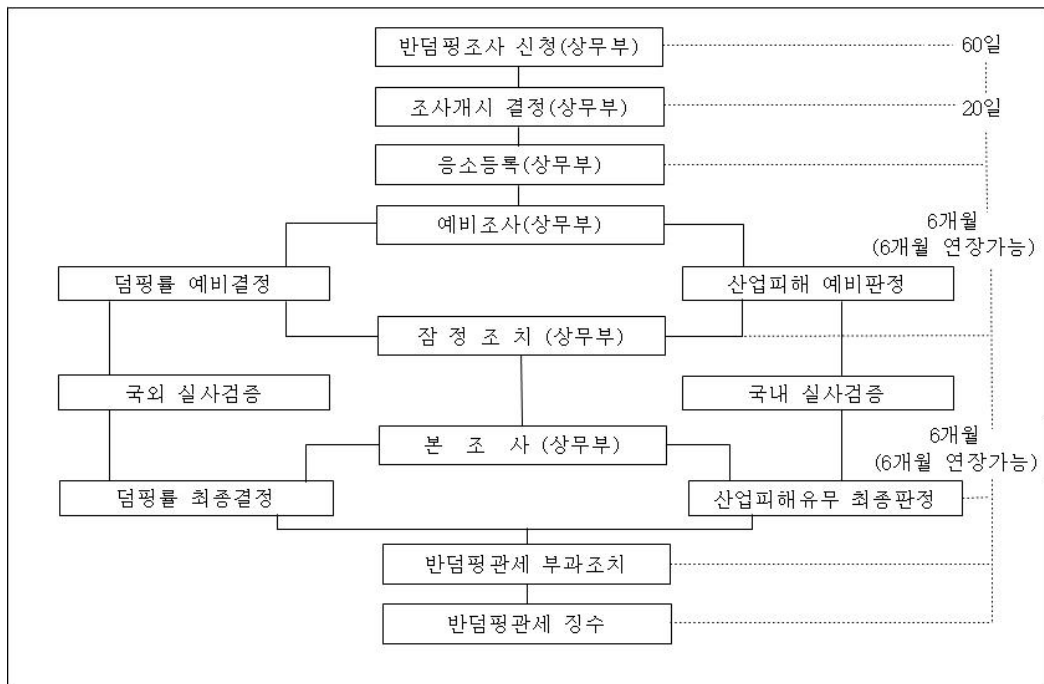
20) WTO 반덤핑협정 제6조 제2항

조사당국은 일반적으로 조사대상 상품의 알려진 관련 수출자 또는 생산자 각각에 대하여 개별적인 덤핑마진을 결정하여야 하나, 관련된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또는 관련 상품의 유형의 수가 너무 많아 이러한 결정이 불가능한 경우 표본조사를 할 수 있다.²¹⁾ 표본조사의 대상에서 제외된 수출자나 생산자의 경우 반덤핑관세는 선정된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하여 설정된 덤핑마진의 가중평균 또는 반덤핑관세의 지불책임이 예상되는 정상가격을 기초로 계산되는 경우, 선정된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가중평균정상가격과 개별적으로 검사되지 아니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수출가격간의 차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²²⁾

2. 중국의 반덤핑제도 절차

다음의 <그림 3-1> 은 중국의 반덤핑 조사절차를 도식화하여 앞서 설명한 기관별 해당 업무에 따라 최종결정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3-1> 중국의 반덤핑 조사 절차



자료 : 정지원·외2, 「한·중 FTA 반덤핑분야 제도 및 예상쟁점」, 대외경제연구원, 2007, P53. 연구자 재구성

21) WTO 반덤핑협정 제6조 제10항

22) WTO 반덤핑협정 제9조 제4항

3. 조사신청

중국의 「반덤핑조례」는 ‘국내산업 또는 국내 산업을 대표하는 자연인, 법인 또는 관련조직은 서면으로 상무부에 반덤핑 조사를 청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반덤핑조례 제13조. 반덤핑 조사개시에 관한 잠정규칙-이하 ‘조사개시규칙’이라 함, 제4조, 10조).²³⁾ 청원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국내생산자 중 찬성하는 생산자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이들이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 이상일 경우, 국내 산업을 대표하여 청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²⁴⁾ 국내산업이 다양하게 위치하고 있고 수가 많은 경우 통계학적으로 타당한 표본조사 기법을 사용하여 위의 청원적격을 심사할 수 있다.²⁵⁾

‘국내산업’이란 ‘중국 내에서 당해 수입품의 동종 상품을 전량 생산하는 산업, 또는 그 생산량이 그 동종 상품의 국내 총생산의 주요부분을 차지하는 산업’을 말하며,²⁶⁾ ‘주요부분’이란 ‘50% 초과’를 의미한다.²⁷⁾ 이때, 당해 수입품의 수출자나 수입자와 관련된 국내생산자 또는 그 자신이 수입자인 국내생산자는 국내산업의 범위에서 제외된다.²⁸⁾ 특수상황 하에서 특정 지역시장에서 동종 상품의 전부나 거의 전부를 공급하는 국내 생산자는 여타 지역의 생산자에 의해 이 지역으로 동종 상품이 공급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산업으로 간주될 수 있다.²⁹⁾ 이러한 지역산업을 인정할 때, 당해 생산자가 지역시장에서 동종 상품 생산량의 전량이나 거의 대부분을 판매하고 있는지 여부, 타 지역의 다른 생산자가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시장의 수요의 상당량을 공급하지 않고 있는지 여부, 기타 사항 등을 고려해야 한다(반덤핑 산업피해조사규정-이하 ‘산업피해조사규정’이라 함, 제14조).

그런데 위와 같은 국내산업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동종 상품의 개념 및 범위가 먼저 확정되어야 한다. 「반덤핑조례」에서는 동종 상품이란 덤핑된 수입품과 ‘동일한 상품’, 이러한 상품이 없는 경우는 그것과 ‘가장 유사한 특징을 지닌(特性最相似的) 상품’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³⁰⁾ 산업피해조사규정에서는 동종 상품 판정시 ‘상품의 물리적 특성, 화학적 성능, 생산설비나 기술, 제품의 용도, 제품의 대체가능성, 소비자와 생산자의 평가, 판매경로, 가격’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산업피해조사규정 제10조).

23) 실제로 청원서는 상무부 소속 수출입공평무역국에 제출되어야 한다(반덤핑 조사개시에 관한 잠정규칙 제30조).

24) 중국 반덤핑조례 제17조, 반덤핑 조사개시에 관한 잠정규칙 제6조

25) 중국 반덤핑조례 제13조, 반덤핑 조사개시에 관한 잠정규칙 제7조

26) 중국 반덤핑조례 제11조

27) 중국 반덤핑조례 제13조, 반덤핑 조사개시에 관한 잠정규칙 제5조

28) 중국 반덤핑조례 제11조, 반덤핑 조사개시에 관한 잠정규칙 제8조

29) 중국 반덤핑조례 제11조, 반덤핑 조사개시에 관한 잠정규칙 제9조

30) 중국 반덤핑조례 제12조

4. 조사개시

국내 산업으로부터 청원이 이루어지면 상무부(수출입공평무역국)는 청원서 및 필요한 첨부물을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청원적격, 청원서의 내용, 필요 증거 제출여부 등을 심사하고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한다.³¹⁾ 이에 상무부는 반덤핑 조사개시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이전(在決定立案調查前)’에 이를 수출국에 통보해야 한다(반덤핑조례 제16조).

한편, 국내 산업이 청원한 경우가 아닐지라도 상무부는 특별한 상황 하에서 자체적으로 조사개시를 결정할 수 있는 데, 이 경우에는 덤핑, 피해 및 인과관계에 관한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³²⁾

5. 반덤핑관세의 부과와 조사종결

덤핑사실에 대한 최종판정 결정은 상무부에 의해 확인되고, 덤핑에 의한 산업피해가 존재한다고 판단된 경우, 최종 판정된 덤핑마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반덤핑관세가 부과된다(반덤핑조례 제37, 42조). 덤핑물품의 수입자가 반덤핑관세를 납부한다(반덤핑조례 제40조). 반덤핑관세의 징수절차는 상무부가 건의하고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가 결정하며, 상무부는 이를 공고하여 세관이 공고에서 규정한 집행일자로부터 집행한다(반덤핑조례 제38조). 반덤핑관세의 부과는 최종판정공고일로부터 5년간 징수된다(반덤핑조례 제48조). 만일 덤핑물품의 수입자가 이미 납부한 반덤핑관세액이 덤핑마진을 초과하여 납부되었음이 입증된 경우에는 상무부에 관세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반덤핑조례 제46조). 우리나라의 경우는 무역위원회로부터 덤핑사실에 대한 조사결과를 통지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반덤핑관세의 부과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별도로, 「반덤핑조례」에서 악의적 덤핑사실이 입증된 경우에 대해서는 징벌적 조치로써 반덤핑관세의 소급적용을 규정하고 있다. 즉, ①국내 산업에 피해를 초래한 덤핑기록이 있는 덤핑수입물품 또는 덤핑으로 인해 국내 산업에 피해를 초래한 경우, ②덤핑물품이 단기간에 다량으로 수입되어 국내 산업에 피해를 초래한 경우 등을 모두 충족시킨 경우에는 반덤핑관세를 소급하여 징수할 수 있다(반덤핑조례 제44조).

덤핑사실에 대하여 최종판정이 이루어지면 원칙적으로 반덤핑조사는 종료된다. 그 이외에도 상무부가 의무적으로 조사를 종료해야 하는 사유로는 ①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한 경우,

31) 중국 반덤핑조례 제16조, 반덤핑 조사개시에 관한 잠정규칙 제33조

32) 중국 반덤핑조례 제18조, 반덤핑 조사개시에 관한 잠정규칙 제42조

②덤핑·피해 또는 인과관계의 존재에 대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 ③덤핑마진이 2% 미만이거나 덤핑수입량이나 피해가 경미한 경우, ④가격약속이 성립된 경우, ⑤상무부가 반덤핑 피해 조사를 계속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이다.³³⁾

6.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의 비교내용

수입물품의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의 차이인 덤핑마진을 공정하고 합리적인 비교를 통해 덤핑여부가 판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의 비교는 반덤핑조치에 있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을 비교하는 계산방식과 관련하여 「반덤핑조례」에 의하면 상무부는 가중 평균된 정상가격과 가중 평균된 수출가격을 상호 비교하거나, 아니면 각 거래별로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을 비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반덤핑조례 제6조). 다만 ‘구매자, 구매지역, 구매 시기에 따라 수출가격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위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가중 평균된 정상가격과 개별 수출거래 가격간의 비교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허용된다(반덤핑조례 제6조).

한편,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을 비교할 때의 구체적인 고려요소들에 대해서 「반덤핑조례」는 ‘가격 비교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해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식에 의해 비교해야 한다.’는 주의규정을 두고 있다.³⁴⁾

「WTO 반덤핑협정」에서는 수출국의 동종제품의 판매가 수입국에 대한 조사대상물품 판매의 5% 이상일 경우에 정상가격 결정을 위한 충분한 수량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있으나, 반면 중국의 「반덤핑조례」의 규정에는 이러한 정상가격 결정기준에 대한 구체적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또한 「WTO 반덤핑협정」에는 정상가격의 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반해 중국의 「반덤핑조례」에는 이와 관련된 조항을 두고 있지 못하며, 실제 적 판정 시 원가미만의 판매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단순히 비정상거래로 취급함으로써 정상가격의 결정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정상가격을 낮게 책정하는 결함으로써 정상거래를 덤핑으로 판정하게 되는 경우를 초래하게 된다.

7. 가격약속

중국은 가격약속제도³⁵⁾에 대하여 「반덤핑조례」의 규정은 반덤핑 조사대상물품의 수출자가

33) 중국 반덤핑조례 제27조

34) 중국 반덤핑조례 제6조

조사기간 중 수출가격 인상이나 덤핑가격으로의 수출을 중단할 것을 상무부와 약정하면 조사를 중지하거나 종료할 것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³⁶⁾

또한 「반덤핑조례」 제31조 제2항과 3항에 의거하여 상무부는 수출자에게 가격약속을 제안할 수 있으나 가격약속을 수락하도록 강요하지는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반덤핑조사가격 약속에 관한 잠정규정」(이하 ‘가격약속규칙’이라 함)에 가격인상의 약속은 덤핑마진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을 초과할 수 없고 국내산업의 피해를 제거하기에 적절한 수준이라면 인상폭은 덤핑마진 이하로 정하도록 하는 상세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WTO 반덤핑협정」상의 가격약속에 관한 규정들을 기초로 상세한 결정 기준 및 절차적 사항들을 추가한 것으로 보여진다.

「가격약속규칙」에서는 가격약속을 ‘반덤핑 조사에 임하는 수출자나 생산자가 반덤핑 조사를 중지하거나 종결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조사대상 제품의 수출가격을 수정하거나 덤핑된 가격으로 수출을 중지할 것을 제안하고 이를 상무부가 수락하여 체결된 약정’으로 정의하고 있다(가격약속규칙 제3조).

상무부는 수출자에게 이러한 약속을 제안할 수 있으나, 강요해서는 안된다(반덤핑조례 제31조, 가격약속규칙 제4, 5조). 또한 가격약속에 대한 제안은 예비판정 결과가 공고된 이후 45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상무부는 예비판정의 결과 덤핑 및 산업피해에 대한 긍정판정이 내려지지 않으면 수출자나 생산자에게 반덤핑 조사의 가격약속을 제안하거나 수락할 것을 권고해서는 안된다(가격약속규칙 제6조).

그리고 상무부는 가격약속 요청을 받은 후, 이를 요청서의 공개가능본을 첨부하여 다른 이해관계인에 통보하고 그 서면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가격약속규칙 제9조), 상무부가 가격약속의 제안을 하는 경우 가격약속의 제안이 비밀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수출자와 생산자는 상무부에 당해 정보의 비밀유지를 요청할 수 있는데, 이 때 해당 정보의 공개가능 요지를 첨부하여야 한다(가격약속규칙 제8조).

한편, 상무부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제의한 약정이 수락가능하고 공공의 이익에 합치된다고 판단하면 조사를 중지시키거나 종료시킬 수 있다.³⁷⁾ 상무부가 가격약속 제안에 대한 수락여부 고려 시 산업피해가 제거될 수 있는지 여부, 약정의 이행을 감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조치의 존재여부, 중국의 국가이익과의 합치성, 그리고 약정의 우회 가능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가격약속규칙 제10조). 이 때 중요한 것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가격약속을 제

35) 반덤핑 조사대상물품의 수출자는 조사기간 중 수출 가격인상이나 덤핑가격으로의 수출을 중단할 것을 수입국 당국과 약정함으로써 조사를 중지시킬 수 있는데, 이를 ‘가격약속제도(Price Undertakings)’라 한다.

36) 중국 반덤핑조례 제31조 제1항

37) 중국 반덤핑조례 제33조

안한 경우 상무부는 ‘조사기간 동안 충분한 협조를 제공하여 조사에 임한 수출자나 생산자가 제안한 가격약속만을 수락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가격약속규칙 제11조).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여 상무부가 기업이 제의한 약정이 수락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조사를 중지시키거나 종료시킬 수 있으며, 이를 상무부가 공고한다(반덤핑조례 제33조, 가격약속규칙 제12조). 한편, 상무부가 가격약속을 수락하지 않은 경우는 관련 수출자에 대해 그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상무부가 기업의 제의를 거절하게 되면, 이에 대해 당해 기업이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가격약속 제의 거절결정 및 그 사유를 최종판정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반덤핑조례 제33조, 가격약속규칙 제13조).

일단 가격약속이 성립되면, 약정제품의 범위, 참조가격(가격설정, 가격인상의 형태, 가격인상의 폭, 단계별 가격조정 등), 보고 의무, 현장검증의 명시적 수락의사, 약정을 우회하지 않는다는 보장, 기타 상무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을 약정서에 포함시켜야 한다(가격약속규칙 제14조). 가격약속하의 가격인상폭은 원칙적으로 예비판정에서 산정된 덤핑마진과 일치하여야 하나, 그 이하의 가격인상폭으로도 산업피해를 제거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덤핑마진보다 적은 가격인상폭을 설정할 수 있다.

이러한 가격약속은 상무부의 반덤핑 조사 중지나 종결 공고 시점에 발효되며, 5년간 그 효력이 지속된다. 단, 이 기간은 상무부가 조사에 응하고 있는 기업의 일부분에 대해서만 가격약속을 수락한 경우에는 나머지 기업들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종결된 날로부터 기산된다(가격약속규칙 제15, 16조). 일단 가격약속이 상무부에 의하여 수락되면, 가격약속의 발효 후 7일 이내에 WTO 반덤핑위원회에 통보된다(가격약속규칙 제30조). 이 경우 상무부는 수출자에 약정 이행과 관련한 정보나 자료를 정기적으로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정보나 자료의 진위를 검증할 수 있다.³⁸⁾ 이러한 상무부의 권한은 가격약속의 이행을 감시³⁹⁾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감시를 통해 약정 위반이 드러난 경우에는 상무부는 즉시 반덤핑 조사의 재개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입수가능한 최선의 정보에 기해 잠정조치를 취한 후 조사를 진행하여, 잠정조치를 실시하기 전 90일 이내에 수입한 제품에 대하여 반덤핑관세를 소급 징수할 수 있다. 단, 가격약속을 위반하기 전에 수입한 제품에 대한 소급 징수는 금지된다.⁴⁰⁾ 이 때, 최종판정에서 산정된 반덤핑관세가 예비판정에서 산정된 반덤핑관세 보다 높은 경우 그 차액은 부과되며, 반대의 경우에는 그 차액은 환급된다(가격약속규칙 제27조). 그러나 가격약속의 위

38) 중국 반덤핑조례 제35조

39) 주로 기업이 제출한 자료에 대한 검증을 통해 감시가 이루어지며, 이러한 검증에는 현장검증도 포함된다(가격약속규칙 제17조).

40) 중국 반덤핑조례 제36조, 가격약속규칙 제27조

반시기가 반덤핑 조사 완료 및 덤핑마진 산정 이후라면, 위반 즉시 반덤핑관세를 잠정조치 실시 전 90일까지 소급해서 부과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가격약속을 위반하기 전에 수입한 제품에 대한 소급 징수는 금지된다(가격약속규칙 제26조).

한편, 상무부가 수출자와의 약정의 성립으로 조사절차가 중지되거나 종료된 후에도 수출자의 요청이 있거나, 약정위반이 성립하면, 또한 상무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조사를 속개할 수 있다(반덤핑조례 제34조, 가격약속규칙 제18조). 속개된 조사의 결과 덤핑이나 피해의 부정판정이 내려지면 가격약속의 효력은 자동적으로 상실되며, 덤핑이나 피해의 긍정판정이 내려지면 가격약속의 효력은 지속된다(반덤핑조례 제34조, 가격약속규칙 제19, 20조).

이 때, 가격약속이 있기 때문에 긍정판정이 내려지지 않은 경우에는 상무부는 합리적인 기간 동안 약정을 지속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가격약속규칙 제21조).

이와 함께 가격약속이 더 이상 중국의 국가이익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상무부는 가격약속 수락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가격약속규칙 제22조). 이 경우, 취소조치가 발효되기 합리적인 기간 이전에 약정당사자인 기업에 취소 의사를 통보하여 이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또한 가격약속의 당사자인 기업들도 30일 이전의 통지를 통해 약정을 철회할 수 있다. 상무부는 가격약속의 취소결정을 내리거나 약정 당사자 기업이 철회통고를 해온 경우, 이러한 취소나 철회가 발효되는 날로부터 원래의 예비판정에 따라 잠정 반덤핑조치를 취할 것을 세관에 통지하며 즉시 반덤핑 조사절차를 재개한다(가격약속규칙 제23 내지 25조).

8. 일몰재심과 중간재심

WTO 협정 제11.3조는 일몰조항 관련 반덤핑조치의 적용기간에 관한 것인데, 반덤핑 조치 적용 후 5년 안에 종료되어야 하는 것이 일반적 규칙이지만, 5년이 되는 시점에서 산업피해나 덤핑의 재발여부를 판단해서 반덤핑조치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일몰재심(Sunset Review)이다. 실제로 일몰재심에 의하여 실제로 반덤핑조치를 연장해 오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현재 중국은 일몰재심에 관한 규정을 「반덤핑조례」에서 단지 하나의 조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나 절차를 규정한 법규는 존재하지 않는다.

「반덤핑조례」에 따르면 반덤핑조치의 기한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 가격약속의 경우도 5년을 초과하여 이행되지 않는다. 그러나 재심을 거쳐 반덤핑관세의 종료

덤핑이나 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판정될 경우 반덤핑관세 부과 기간이 적절히 연장될 수 있다.⁴¹⁾

이는 「WTO 반덤핑협정」의 일몰재심⁴²⁾과 부합되는 규정이다. 그런데 중국의 일몰재심과 관련된 규정은 「반덤핑조례」에서 하나의 조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중간재심(Interim Review)’에 대한 규정을 두고 이를 상세히 명문화하고 있다.

반덤핑관세 부과 후 합리적인 기간이 경과한 경우, 상무부는 이해관계인의 신청 및 관련 증거에 대한 심사에 따라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필요성에 대한 재심을 결정할 수 있다(반덤핑조례 제49조). 이에 대해서는 「덤핑 및 덤핑마진 중간재심에 관한 잠정규칙」(이하 ‘중간재심규칙’이라 함)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는데, 동 규칙에서는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이 반덤핑조치 이후 변화된 사실에 비추어 반덤핑조치를 원래의 형태와 수준으로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반덤핑조치가 유효한 기간 동안 진행되는 재심’을 중간재심으로 정의하고 있다.⁴³⁾ 이러한 재심은 신청에 의하거나 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상무부 직권으로 실시를 결정할 수 있다.⁴⁴⁾

수출자 및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재심을 신청한 경우 상무부는 7일 이내에 원 반덤핑 조사 청원자에게 통지하고 중간재심 개시여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중간재심규칙 제11, 20조). 국내 산업에 의해 중간재심이 신청되는 경우 상무부는 7일 이내에 중국내에 위치한 수출국의 대표기관에 신청서의 공개가능본 및 요지를 작성하여 송부한다. 이에 수출자 및 생산자는 21일 이내에 재심개시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중간재심규칙 제15, 16조).

상무부는 통상 중간재심 신청서 접수 후 60일 이내에 중간재심의 개시여부를 결정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중국도 실제로 반덤핑조치 종료 60일 전까지만 중간재심을 요청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상무부는 중간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하면 관련 사항을 공고한다(중간재심규칙 제22, 24조). 수출자 및 생산자가 중간재심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자의 조사대상 제품의 정상가격, 수출가격 및 덤핑마진에 한정하여 조사를 진행한다. 한편, 국내 산업이 중간재심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서에 기재된 모든 수출자 및 생산자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며, 최초의 반덤핑 조사에서 덤핑마진이 전혀 없거나 미소마진으로 판정된 기업에 대해서도 중간재심을 진행한다. 수입자가 중간재심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나 증거를 상무부에 제출하기로 약속한 수출자 및 생산자에 한해 중간재심이 진행된다(중간재심규칙 제25조 내지

41) 중국 반덤핑조례 제48조

42) WTO 「반덤핑협정」 Sec. 11.3 참조.

43) 중간재심규칙 제3조

44) 중국 반덤핑조례 제49조, 중간재심규칙 제4조

제27조). 중간재심 대상기간은 재심신청 이전 12개월로 설정되며, 중간재심시 반덤핑 조사에 관한 규정 중 ①표본조사에 관한 규정, ②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의 산정·조정·비교에 관한 규정, ③덤핑마진 산정 규정, ④현장검증에 관한 규정, ⑤가격약속에 관한 규정 등이 준용된다.⁴⁵⁾ 중간재심에 대한 예비판정은 내려지지 않으나, 조사의 예비적 결론을 도출하여 그 결론이 기초한 사실 및 이유를 공고한 후, 최소한 10일의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추가정보 제공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중간재심 신청인은 예비적 결론이 내려지고 사실 및 이유가 공고된 이후에는 중간재심신청을 철회하지 못한다(중간재심규칙 제33, 34조).

이러한 중간재심은 재심실시 결정이후 12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⁴⁶⁾ 상무부는 중간재심의 결과 반덤핑관세의 철회나 수정을 관세세칙위원회에 건의하고 동 위원회는 이에 대해 결정한다. 재심의 진행이 반덤핑관세의 부과를 저해하지 않는다. 중간재심의 판정은 재심판정 결과가 공지된 날 이후로부터 효력을 발휘하며 소급되지 않는다. 중간재심이 수출자 및 생산자 또는 수입자에 의해 반덤핑조치가 종료되기 전 1년 이내에 신청되고 반덤핑조치 종료시점까지 재심절차가 완결되지 않는 경우, 국내 산업이나 상무부가 일몰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하지 않으면, 상무부는 중간재심 절차 및 그 신청을 종결하고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 중간재심이 국내 산업에 의해 반덤핑조치가 종료되기 전 1년 이내에 신청되고 반덤핑조치 종료시점까지 중간재심절차가 완결되지 않는 경우, 상무부는 국내 산업이 일몰재심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일몰재심 개시 공고를 하고 일몰재심과 중간재심을 결합하여 동시에 판정할 수 있다.⁴⁷⁾

IV. 중국 반덤핑 법규와 WTO 반덤핑협정과의 적합성 비교

1. 덤핑마진 산정 적합성 비교

덤핑마진의 산정은 수출국에서의 정상가격과 수출가격간의 비교로 이루어진다. 반덤핑 조치시 덤핑마진이 클수록 조사대상물품의 수출자 및 수입자에게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WTO 반덤핑협정」⁴⁸⁾에 따르면, 정상가격과 수출가격간의 비교는 원칙적으로 ‘일반적으로

45) 중간재심규칙 제28, 29, 30, 32, 35조

46) 중국 반덤핑조례 제51조, 중간재심규칙 제36조

47) 중간재심규칙 제37조 내지 제40조

조사기간 동안의 덤핑마진의 존재를 가중평균 정상가격과 모든 비교가능한 수출거래가격의 가중평균과의 비교에 기초하거나 또는 각각의 거래에 기초한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의 비교' 방식을 취하도록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조사당국이 상이한 구매자, 지역, 또는 기간별로 현저히 다른 수출가격의 양태를 발견하고, 가중평균 비교방식 또는 거래별 비교방식의 사용으로 이러한 차이점이 적절히 고려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제시된 경우에는 가중평균에 기초하여 결정된 정상가격이 개별 수출거래가격에 비교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⁴⁹⁾

다시 말해, 정상가격과 수출가격간의 비교시의 예외적인 경우로서 조사당국이 가중 평균된 정상가격과 개별 수출거래 가격간의 비교방식을 채택하는 경우, 가중평균가격간의 비교방식 또는 개별 거래가격간의 비교방식이 모두 적용되기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을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중국 「반덤핑조례」 제6조에서는 상무부가 이러한 부득이한 사정에 대한 판단에 입각해 가중 평균된 정상가격과 개별 수출거래 가격간의 비교방식을 채택할 수 있도록 규정할 뿐, 이를 설명할 의무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그런데 중국의 「반덤핑조례」 제6조와 WTO 「반덤핑협정」을 비교해 보면, 만일 이러한 부득이한 사정에 대하여 설명을 하지 못한다면 가중 평균된 정상가격과 개별 수출거래 가격간의 비교방식을 채택할 수 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입증절차가 필요한데, 중국 상무부가 반덤핑 조사과정에서 개별 수출가격이 가중평균에 기초하여 결정된 수출가격보다 높을 경우, 아무런 설명 없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 부득이한 사정이 있음을 주장하며, 가중 평균된 정상가격과 개별 수출거래 가격간의 비교방식을 채택한다면, 부당하게 큰 폭의 덤핑마진을 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이는 결국 중국 정부가 수입규제의 효율적인 수단으로써 반덤핑 법규를 자의적으로 운용할 여지를 남겨 두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중국은 「반덤핑조례」에 정상가격과 수출가격간의 비교시 예외적인 경우로서 조사당국이 가중 평균된 정상가격과 개별 수출거래 가격간의 비교방식을 채택하는 경우, 가중평균가격간의 비교방식 또는 개별 거래가격간의 비교방식이 모두 적용되기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을 상무부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덤핑조사과정의 투명성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한편, 정상가격과 수출가격간의 공정한 비교를 위해 WTO 「반덤핑협정」에서는 정상가격과 수출가격 간의 비교의 시기와 단계를 일치시키기 위한 제반판매조건, 과세, 거래단계, 수량, 물리적 특성, 기타 가격비교에 영향을 미치는 차이점 등의 고려요소들을 규정해 두고 있다.⁵⁰⁾ 이와 함께 동 협정에서는 정상가격과 수출가격간의 비교시 화폐단위의 변경이 요구되

48) Agreement on the Implementation of Article VI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

49) WTO 반덤핑협정 Sec. 2.4.2

는 경우 이러한 변경은 판매일자의 환율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선물시장에 서의 외환의 판매가 관련 수출판매와 직접 연계되어 있는 경우에는 선물판매환율이 사용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⁵¹⁾

이에 대하여 중국의 「반덤핑조례」에서는 공평하고 합리적 비교원칙만을 선언하는 데에 그 치고 있다. 즉,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을 비교할 때의 구체적인 고려요소들에 대해서 「반덤핑 조례」에서는 단순히 ‘가격 비교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해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식에 의 해 비교해야 한다.’는 주의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⁵²⁾ 이와 같은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을 비 교할 때 고려해야 하는 요소에 대한 구체적 규정의 미비는 WTO 「반덤핑협정」에서 규정한 고려 요소들에 대한 고려가 전적으로 상무부의 재량적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덤핑마진 산정시 피제소기업에게 불리한 판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 역 시 중국 정부가 수입규제 수단으로써 반덤핑 법규를 활용할 여지를 남겨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은 반덤핑 법규에서 반덤핑 조사시 화폐 단위의 변경과 환율의 선택과 관련된 구체적 규정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2. 가격약속제도 적합성 비교

중국은 가격약속과 관련하여 가격약속 제안에 대한 기간제한, 가격약속과정에서 제출된 기 업의 자료에 대한 비밀보호, 반덤핑당국이 약정제안을 수락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시 고려해 야할 사항, 가격약정서에 포함될 내용, 구체적 약정 위반 사유에 대한 기술, 약정의 취소나 철회관련 사항 등 가격약속 제도의 실시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관련법규에서 명문으로 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반덤핑 법규에서는 조사기간 동안 ‘충분히 협조적으로 조사에 임한 기업이 제출한 가격약속 제안만 수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가격약속규칙 제11조). 이는 반덤핑 조 사에 비협조적인 기업에 대해서는 가격약속의 제의를 거절한다는 것이다. 이에 관한 WTO 「 반덤핑협정」의 규정에 따르면 조사당국은 ‘가격약속 제안을 수락하는 것이 비현실적 (impracticable)이거나 또는 일반 정책적인 사유(reasons of general policy)가 있는 경우 이를 거 절할 수 있으며, 거절시에는 가능한 한 거절의 사유를 통보하고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부여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WTO 반덤핑협정 Sec. 8.3).

50) WTO 반덤핑협정 Sec. 2.4

51) WTO 반덤핑협정 Sec. 2.4.1

52) 중국 반덤핑조례 제6조

따라서 중국 당국의 덤핑 조사에 ‘충분히 협조적으로 임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가격약속을 거절하는 것이 일반 정책적인 사유에 의한 거절로 합리화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충분히 협조적인지 아닌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상무부가 이러한 사유로 인한 거절 후에는 약정 제안 기업에 이를 통보하고 의견제시 기회를 부여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만일 상무부가 조사에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를 들어 가격약속을 거절하고 아무런 통보나 의견진술에 대한 기회를 주지 않는 경우에는 WTO 「반덤핑협정」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중국의 「반덤핑조례」에서 가격약속을 약정한 기업이 약정을 위반하는 경우 즉시 입수 가능한 최선의 정보에 준하여 잠정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WTO 「반덤핑협정」과 부합된다. 또한, 이 경우 조사절차를 재개해서 최종관정을 내린 후 반덤핑관세를 잠정관세 부과일로부터 90일까지 소급해서 부과하는 것도 논란의 여지가 없다. 이러한 조치는 WTO 「반덤핑협정」 Sec. 8.6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 반대의 경우, 즉, 기업이 이미 약정한 가격약속을 위반한 상황에서 최종관정에서 산정된 반덤핑관세가 예비관정에서 산정된 잠정관세보다 높게 나타났을 때, ‘그 차액을 해당기업에게 부과’하는 데에서 발생한다.(반덤핑조례 가격약속규칙 제27조). 다시 말하면, 보통의 경우라면 반덤핑관세가 잠정관세보다 높은 경우 반덤핑관세의 소급적용에도 불구하고 그 차액은 징수하지 않는 것인데,⁵³⁾ 가격약속 위반의 경우는 이를 징수하고 있는 것이다. 비록 해당 기업이 약정을 준수하지 않아 조사가 재개되어 반덤핑관세가 부과되는 것이라고 해도 특별히 이러한 경우에 반덤핑관세와 잠정관세간의 차액을 해당 기업에 부과시켜야 할 근거는 찾기 힘들다. 특히, 수출국 기업이 가격약속을 위반하게 되면 상무부는 어차피 입수 가능한 정보에 의한 관정에 따라 잠정관세를 즉시 부과하게 되므로 가격약속 위반에 대한 법률적 대처는 충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볼 때, 중국의 반덤핑 법규가 가격약속 위반에 대한 대처 차원을 넘어서 약정 위반 기업에 대해서만 최종관정에서 산정된 반덤핑관세가 예비관정에서 산정된 잠정관세보다 높은 경우 반덤핑관세와 잠정관세간의 차액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에 근거하기 보다는 당해 기업이 약정을 위반한 데 대한 징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해석된다.

이에 대하여 WTO 「반덤핑협정」은 ‘기업이 가격약속을 위반한 경우에 입수 가능한 정보에 기한 신속한 조치를 취해 잠정관세를 부과하고 반덤핑관세는 잠정조치의 적용이전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본 협정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WTO 반덤핑협정 Sec. 8.6). 동 협

53) 중국 반덤핑조례 제43조, WTO 반덤핑협정 Sec. 10.3

정상에는 ‘반덤핑관세가 잠정관세보다 높은 경우는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않는다.’고 규정(WTO 반덤핑협정 Sec. 10.3)되어 있을 뿐, 기업이 약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WTO 「반덤핑협정」상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기업이 약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반덤핑관세와 잠정관세간의 차액을 기업에게 부담시키는 예외규정을 삭제하여 WTO 「반덤핑협정」과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반덤핑 조사종료의 적합성 비교

WTO 「반덤핑협정」에서는 반덤핑 조사의 의무적 종료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동 협정에서는 ‘관계당국이 사안의 진행을 정당화시킬 만큼 덤핑 또는 피해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납득하는 즉시 반덤핑 조사 신청은 기각되고 조사는 신속히 종결된다. 덤핑마진이 최소허용 수준인 수출가격 대비 백분율로 표시된 덤핑마진이 2% 미만인 경우이거나, 또는 실제적 또는 잠재적인 덤핑수입량이나 피해가 무시할 만한 수준이라고 당국이 결정하는 경우 조사는 즉각적으로 종결된다. 특정국으로부터의 덤핑수입물량이 수입 회원국내 동종 상품 수입량의 3% 미만을 점유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개별적으로 수입회원국내 동종 상품 수입의 3%미만을 점유하는 국가들이 총체적으로 수입회원국내 동종 상품 수입물량의 7%를 초과 점유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덤핑수입량은 일반적으로 무시할 만한 수준으로 간주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⁵⁴⁾

중국의 「반덤핑조례」에서도 증거 불충분시 또는 미소마진⁵⁵⁾ 판정시에 조사를 종료할 것을 규정하는 등 WTO 「반덤핑협정」상의 의무적 조사종료 사유에 비교적 충실히 따르고 있다.⁵⁶⁾ 그러나 중국의 「반덤핑조례」에서는 ‘한 국가로부터의 반덤핑 조사 대상 제품의 수입량이 동종 상품의 총수입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 미만일 경우 경미한 수입량으로 판정하여 조사를 종료할 것’을 규정한 「반덤핑협정」의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 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 즉, 「반덤핑조례」 제27조에서 막연히 ‘덤핑수입량이나 피해가 경미한 경우’ 조사를 종결할 것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경미한 수입량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⁵⁷⁾

이는 실제로 조사과정에서 덤핑수입량이나 피해가 경미한지의 여부를 상무부가 자의적 판단에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므로, 중국의 「반덤핑조례」에 반드시 경미수입량의 판정과 판

54) WTO 반덤핑협정 Sec. 5.8

55) 덤핑마진의 최소허용 수준으로써, 수출가격 대비 백분율로 표시된 덤핑마진이 2% 미만인 경우를 의미함.

56) 중국 반덤핑조례 제27조

57) 다만, 덤핑수입제품이 두개 이상의 국가(지역)에서 수입되는 경우의 산업피해 조사와 관련해서 경미수입량기준을 제시하여 누적평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반덤핑조례 제9조).

련된 구체적 규정을 WTO의 「반덤핑협정」과 부합되게 할 필요가 있다.

4. 일몰재심의 적합성 비교

WTO 「반덤핑협정」에서는 일몰재심에 관하여 ‘반덤핑관세는 한번 부과되면 최대한 5년 동안 부과될 수 있으며, 만일 5년 이상 연장하기 위해서는 조사당국의 직권이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재심을 개최하여 반덤핑조치의 만료가 덤핑 및 피해의 계속이나 재발을 불러일으킬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덤핑관세는 이러한 재심 기간 동안 부과될 수 있다.⁵⁸⁾ 이와 더불어 동 협정에 따르면 중간재심과 관련해서는 조사당국이 자체적으로 재심을 결정할 수 있고, 반덤핑조치가 취해진 후 합리적인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재심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해관계인들은 이러한 중간재심을 통해 당국이 반덤핑관세의 계속적인 부과가 필요한지, 또는 반덤핑관세가 철회되면 산업피해가 계속되거나 재발할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할 것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⁵⁹⁾ 이러한 일몰재심 및 중간재심은 신속히 진행되어야 하고 통상 12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⁶⁰⁾

그러나 WTO 「반덤핑협정」에서는 반덤핑 조사의 증거조사에 관한 규정만 재심에 적용된다는 준용규정(WTO 반덤핑협정 Sec. 11.4)을 두고 있을 뿐, 연례재심(WTO 반덤핑협정 Sec. 9.3), 신규수출자재심(WTO 반덤핑협정 Sec. 9.5), 상황변경재심(WTO 반덤핑협정 Sec. 11.2)과 관련된 기타 반덤핑 조사 규정들의 재심에 대한 준용규정이 없어 최초조사 관련절차, 방법론을 다른 기준들을 적용하게 함으로써 지금까지 피제소자들에게 부당한 부담을 주고, 덤핑마진의 과대산정이나 덤핑을 상쇄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벗어난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손기윤, 2003). 이로 인해 WTO 회원국들은 재심절차를 상당히 자의적으로 운영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중국의 「반덤핑조례」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간재심과 관련하여 매우 상세한 절차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으며, 중국의 「반덤핑조례」상의 반덤핑 조사와 관련된 많은 규정들을 중간재심과정에도 준용하고 있다.⁶¹⁾ 그러나 이와는 상대적으로 일몰재심에 관한 규정은 동 조례에서 ‘재심을 거쳐 반덤핑관세의 종료가 덤핑이나 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판정된 경우 반덤핑관세 부과 기간이 적절히 연장될 수 있다’고 규정⁶²⁾하고 있을 뿐, 일몰재심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나 절차

58) WTO 반덤핑협정 Sec. 11.3

59) WTO 반덤핑협정 Sec. 11.2

60) WTO 반덤핑협정 Sec. 11.4

61) 중간재심규칙 제29, 30, 32, 35조 참조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일몰재심의 요건이나 신청절차 및 기간 제한 등이 매우 모호하다. 따라서 중국 당국은 향후 중간재심의 절차규칙을 일몰재심에 준용하는 조항을 마련하거나 일몰재심 절차규정을 별도로 마련하여 일몰재심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5. 중국 「반덤핑조례」와 WTO 「반덤핑협정」의 적합성 비교결과

중국은 WTO 회원국으로써 중국의 2004년 개정된 「반덤핑조례」를 여타 다른 회원국가 마찬가지로 WTO 「반덤핑협정」과 합치시켜 운용할 의무가 있다.

중국이 WTO에 제출한 「반덤핑조례」 및 「반보조금조례」 등 무역구제 관련법령들은 WTO 협정과 비교하여 볼 때, 세부규정이 미흡하고, 많은 규정들이 애매하게 서술되었으며, 절차와 방법이 시행기관이 자의적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는 조항들이 다수 존재한다.

WTO 협정과의 부적합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첫째, 중국의 「반덤핑조례」에서는 수입품의 정상가격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국시장에서의 수입품 판매량이 수출국 국내시장의 판매량이 얼마나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WTO 반덤핑협정은 수입국의 판매량이 수출국내 시장의 판매량의 5%이상일 때 정상가격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충분한 양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량의 기준이 없는 중국의 경우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이 많다.

둘째, 중국의 「반덤핑조례」에서는 원가판매 이하가 얼마일 경우 정상가격에서 제외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고 있지 않다. 또한 실질적으로 반덤핑판정에서 원가이하 판매를 무조건 비정상거래로 조고 정상가격에서 제외하여 왔다는 점에서 매우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을 비교하는 것이 반덤핑 조사에서 주요한 절차인데 이러한 가격비교에서 고려해야할 것이 환율이다. 그러나 중국의 반덤핑규정상 이러한 환율적용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는 덤핑결정시 덤핑수출가격과 정상국내가격을 비교할 때 화폐전환(currency conversion)을 해야 한다는 WTO 반덤핑협정 2.4.1조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즉 WTO 반덤핑협정에서는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을 비교하기 위해 통화환산에 거래일 환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수출자가 환율을 조정할 수 있는 최소한 60일 간의 조정기간을 부여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중국은 이러한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환율적용을 자국에 유리하게 할 개연성이 높다(염철용, 2006).

62) 중국 반덤핑조례 제48조

넷째, WTO 「반덤핑협정」은 조사당사국이 반덤핑조치를 내리기 전에 덤핑과 피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중국의 「반덤핑조례」에서는 덤핑이 국내 산업에 초래한 피해를 결정하는 경우 긍정적인 증거에 근거하여야 하며 피해를 초래한 반덤핑요소를 덤핑에 귀결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즉 가중평균정상가격을 개별 수출거래 가격과 비교할 때 다른 방법을 적용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는 WTO 반덤핑협정 2.4.2조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실질적 피해(material injury)에 대한 확정은 이후의 덤핑이 급박하다는 것과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덤핑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믿음에 근거해야 한다는 WTO 반덤핑협정 3.7조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섯째, 잠정조치와 관련된 기간이 WTO 반덤핑협정과 상이하고 연장과 관련한 특수한 규정이 있으나 그에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즉 중국은 반덤핑조례상 수입품에 대한 일반 예비판정이 내려지고 그 후 4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잠정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WTO 반덤핑협정의 경우 6개월 이내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중국의 반덤핑조례에서는 특수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즉 반덤핑관세의 연장에 대한 제한을 담고 있는 WTO 반덤핑협정 7.4조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중국은 향후 WTO 반덤핑위원회에서 행하는 반덤핑 법제심사 등을 통하여 이러한 규정의 WTO 협정 적합성에 대해 명확히 해나갈 의무가 있다.

V. 결 론

중국은 WTO 가입을 계기로 자국의 반덤핑 법규를 WTO 규범과 부합시키려는 노력으로 2004년 이들 법규를 「반덤핑조례」를 비롯한 여러 가지 잠정규칙 및 규정들로 대폭 입법함으로써 교역상대국에 대하여 이를 적용시키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반덤핑 법규는 그 내용이 방대하다는 평가에 비해 중복되거나 상호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며, 그로 인한 적용과정에서 교역상대국에게 투명성, 구체성 등이 결여되어 있다고 많은 지적을 받아 왔다. 한편 중국은 반덤핑 부과와 관련하여 공공이익 요건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규정한 것은 중국 자국의 입장에서 반덤핑조치를 취하는데 있어 유리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중국의 개정 「반덤핑조례」 및 「반보조금조례」 역시 WTO의 「반덤핑협정」과 비교해 볼 때, 여전히 덤핑마진의 산정, 경미수입물량에 대한 조사 종결기준, 일몰재심 등과 관련된 세부규정에 미흡함을 지적받고 있어 법적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가격약속과

관련된 규정들 중 일부 규정은 WTO 「반덤핑협정」과 일치하지 않는다.

이러한 WTO 「반덤핑협정」과의 불일치는 현재 최대 반덤핑조치 부과 대상국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중국정부가 반덤핑조치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많은 재량권과 자의성을 부여함으로써 피제소기업에게 부당하게 적용될 경우 불리한 결과와 그로 인한 교역상대국과의 통상마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 통상부 통계('08년 말 기준)에 의하면 75개 국가들이 중국에게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했으며, 우리 정부가 2005년 이후 중국에게 시장경제국지위를 인정해 준 것은 향후 對中 수출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정부 입장에서 향후 미국과 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과의 시장경제국지위 인정문제를 논의할 때 유리한 입장을 고수할 수 있는 요인을 제공했다고 본다. 최근 중국의 WTO 가입 10주년 행사에서도 관련 국가들은 하루 빨리 중국의 완전한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하고 첨단기술상품의 수출 제한을 풀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 논문의 논의쟁점은 아니지만 반덤핑조사에 있어 중국의 비시장경제지위국 적용 문제는 경제적 측면보다는 정치적 측면을 더 고려해야하는 사안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 최대의 반덤핑조치 피제소국가다. 이는 한국기업의 덤핑수출 행위로 기인한 현상으로도 판단할 있으나, 중국의 현행 반덤핑제도 하에서 상당부분 중국이 관련법규를 수입규제수단으로써 자의적으로 운용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덤핑마진과 피해마진을 비교하여 피해마진이 덤핑마진보다 낮은 경우에는 덤핑마진이 아닌 피해마진을 적용하여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최소부과원칙을 도입함으로써 반덤핑조치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점을 중국도 감안하여 서로의 공통점을 찾는 것이 문제해결에 도움을 줄 것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반덤핑 조사와 관련하여 중국 정부에게 시장경제국지위를 부여한 만큼, 중국에게 이에 상응하는 제도적인 도입이나 내부지침상 운영의 투명성을 요구할 필요가 있고, 이는 우리 정부의 통상정책 수행과정에서 부담을 덜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정부는 단독 혹은 WTO 여타 회원국과 함께 중국 정부에게 반덤핑 법규를 WTO 「반덤핑협정」의 관련 규정과 부합되도록 개정할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중국 정부가 자의적으로 운용할 여지가 있는 모호한 규정들을 구체화시켜 줄 것을 요구해야 한다.

이와는 별도로 우리나라는 중국이 반덤핑 제소를 개시하면, WTO 「반덤핑협정」과 차이가 나는 중국의 「반덤핑조례」를 중국 당국이 어떻게 적용하는 지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여, 규정상의 모호성을 WTO 「반덤핑협정」 관련 내용과 부합되게 적용하는지 혹은 위배되는 적용을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그 대처방안을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곡노도, “중국 반덤핑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0
- 김호, “중국 반덤핑법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 박형선, “중국의 비시장경제(NME)논쟁”, 한국무역협회, 2004
- 신성식·이재규, “동북아시아 주요국의 불공정 무역에 관한 제도검토 및 대응방안”, 『관세학회지』, 제11권 4호, 한국관세학회, 2010
- 염철용, “WTO체제하 한국과 중국의 반덤핑법 비교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이봉, “한국과 중국의 반덤핑법에 관한 연구”, 동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이장완, “중국 반덤핑법제의 실질적 검토”, 『무역구제』, 제16호, 무역위원회, 2004
- 전의찬·김석민, “중국의 반덤핑제소 운용과 법원에 관한 연구”, 『산업경제연구』, 제16권 6호, 한국산업경제학회, 2003
- 최석범, “중국 반덤핑법제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통상정보연구』, 제12권 3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9
- 최송자, “중국 무역구제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통상법률』, 제63호, 법무부, 2005
- 탁세령, “중국의 무역정책과 우리의 대응방안”, 『수은해외경제』, 한국수출입은행, 2004
- 邱照仁, “中國大陸反傾銷制度的介紹與評釋”, 『進口救濟論叢』, 第10期, 1998
- 孫麟, “論建立我國反傾銷案件的司法覆審制度”, 『WTO 與中國法律制度問題研究』, 人民法院出版社, 2001
- 劉文華, “WTO與中國貿易法律制度的沖突與規避”, 中國城市出版社, 2001
- Jianming Shen, “A Critical Analysis of China’s First Regulation on Foreign Dumping and Subsidies and Its Consistency with WTO Agreements”, *Berkeley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15, 2007
- Kermit W. Almstedt & Patrick M. Norton “China’s Antidumping Laws and the WTO Antidumping Agreement(Including Comments on China’s Early Enforcement of its Antidumping Laws)”, *Journal of World Trade*, Vol. 34, No.6. 2000
- Prusa, T. J., “On the Spread and Impact of Anti-Dumping”,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 Vol. 34. 2011

Abstract

A Study on the Comparison Between China's Anti-Dumping System and WTO Agreement

Sung-Shik Shin* · Hae-Bum Choi**

As China is one of WTO member nations, It has an obligation to have to certainly keep a standard regarding anti-dumping systems deciding in WTO agreements. Nonetheless the Chinese anti-dumping laws is causing legal uncertainty because of insufficient details regulations about the account of dumping margins, the termination of an investigation in case of negligible imports, and sunset review And a part of regulations are disagreed with WTO anti-dumping agreement about price undertakings. Therefore, South Korea should indicate them and urge the Chinese government to revise them so that its anti-dumping Law is agreed with WTO agreement. Aside from this, if the anti-dumping investigation is initiated, South Korea government must observe how the Chinese authorities operates its anti-dumping law that do not agree with WTO agreement, and should prepare the countermeasure accordingly. The analysis of this study is concentrated on the compatibility of the WTO anti-dumping agreement with China's interpretation of the antidumping policy and public law. Also, Including our export company, government agencies, academic circles being related, and international trade advisory agencies must expand opportunity of information sharing.

Key words : WTO Agreements, Anti-dumping system, Dumping Margins, The Sunset Review

*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Assistant Prof(Primary author). ssshin@changwon.ac.kr

**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Prof(Co-authors). choih@changwon.ac.kr